

2020년도 제2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10. 26.(월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권현영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8건(안건번호 제2020-139374호~제2020-139443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139374호~139443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"시정권고" 가결 의견임. 단, 기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"경고의 시정권고" 의견임.

- B 위원: 금번 심의안건들은 모두 방송콘텐츠 등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자에게 주는 경제적 영향이 크므로 시정권고 가결처리하는것이 타당합니다.

- C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139374호~제2020-139443호 ♣♣♣♣ 사이트의 방송 <뭉쳐야 찬다> 등 98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 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 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 이에 위의 안전 모두 가결 의견임.

- D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139374호~139443호(순번 1번~70번)<도♣♣♣♣> 사이트의 '(방송)뭉쳐야 찬다(2019)' 등 98건의 게시물>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2020년 제26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10. 26.

분과위원장 권현영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